

의안번호	제 200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266 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12월 10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200
----------	-----

제출연월일 : 2007년 12월 1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1991년도에 설립한 충북학사의 시설 노후와 공간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및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수용함에 한계가 있는 바
- 편의시설을 개선을 통한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보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충북학사를 신축·이전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5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충북학사 이전신축 》

- 위치 : 서울특별시 소재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3,600㎡ 정도
 - 건물신축 : 지하1층·지상8층 10,000㎡
- 사업기간 : 2007. 12 ~ 2009. 12(2년간)
- 사업비 : 45,000백만원(도비)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계	45,000,000	-	-	-
○ 충북학사 이전 신축	45,000,000	-	-	-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 : 별첨**5. 관계법령 : 별 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3,600.00	19,000,000			
	건물	1 건	10,000.00	26,000,000			
	기타						
1	토지	서울특별시 소재 (자하철역 10분내 주거지역)	3,600.00	19,000,000	2007.12~ 2009.12	충북학사 이전 신축 부지	매 입 (사유지)
	건물	"	10,000.00	26,000,000	"	충북학사 이전 신축	신 축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관계법령발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6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0 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토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